|  |  |
| --- | --- |
| 법안 내용 |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공청회 법무부 의견/공청회 진술인 의견[[1]](#footnote-1) |
| 총론 | 출입국관리법에 있는 난민 관련 규정의 존치 여부, 대량난민 유입과 남용의 우려, 예산[[2]](#footnote-2) 확보와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시행일과 관련하여 최소 1년 이상 경과 규정 필요함, 시행전의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자에게도 제정안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전문위원)1심 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는 소송관할 특례 규정, 명백히 남용적 신청자를 별도 절차로 처리하는 규정(법무부) |
| 목적(1조) | 난민 등록, 가입, status determination, 권리와의무 그리고 영속적 해결책 등을 포괄할 수 있게 더 넓혀져야 함(UNHCR) |
| 정의(2조) | 난민 범위 확대로 남용 우려, 난민의 정의에 법무부장법무부부터 난민 인정 받은자라는 문구를 추가, 인도적 지위의 구제적인 요건 명시로 위 지위 부여 받기 어렵게 될 수도 있음,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난민신청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전문위원)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라는 법무법무부터 그러한 지위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함, 난민 개념 확대로 난민 아닌 자의 대량 인정 우려, 난민신청자의 정의를 ‘대한민국에’ 신청한 자라고 규정 하여 재외 공간에서도 난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 있음, 난민신청자의 범위는 사법절차전의 난민인정절차가 계속 중인 자로 한정 해야함, 재정착 난민 중 해외난민이라는 표현 등이 불분명함(법무부).박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변경(황),’난민 등’의 정의에 인정자 추가(황),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 재정의(오), 난민신청자의 정의에서 구두로 난민신청한 자를 포함시켜야(오), 난민협약과의 관계를 규정한 규정 추가(수)[[3]](#footnote-3),복수 국적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의 개념을 무국적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난민신청자 개념도 이에 맞추어 수정(수)2항- 2항의 내용을 “As a result of events occurring before 1 January 1951 and” 와 “as a result of such events”를 생략한 1조의 정확한 용어로 개정하길 추천함. 날짜 제한은 1967년 Protocol에서 없어졌기 때문.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제의 정의와 정지(Cancellation) 그리고 Revocation clauses에도 적용하고 난민 정의에 이들도 추가할 것을 추천함. (UNHCR)4항- 이 조항은 난민상태를 법에 따라 규정하는 행동과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다. 국제적 기준에는 난민상태는 박해나 치명적 상해를 주는 지역으로 돌아가야함을 막아주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할 때에 바로 성립된다. 이것이 난민상태적용의 정의에 추가되기를 강력히 제안함. 그리고 19조에 난민상태의 배제만이 아니라 humanitarian상태의 배제도 포함시킬것. (UNHCR)6항- “외국 국적이거나 무국적의 사람”을 “한국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바꾸어 더 나은 적합성의 조항이 되도록 할 것. (UNHCR) |
| 강제송환금지(3조) | 노출이라는 표현이 부적합함(오)1항- 3조의 “repatriate to a country”를 “expelled or returnedto the frontiers of territories”로 바꿀 것. (UNHCR)2항, 3항- “a country”는 빠져도 괜찮음. (UNHCR)범죄인인도에 대한 새로운 구절. 범죄인인도요청에 대한 새 구절을 넣을 필요있음. (UNHCR)난민 등의 국외추방에 대한 새 구절 필요. (UNHCR) |
| 법적용례(4조) | 처우에 관한 것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위 법인 포함되어야 함(수)1951 Convention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함. (UNHCR) |
| 난민인정의 신청(5조) | 난민신청자가체류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남용가능성 있음(전문위원)이의신청자나 소송중인 자의 체류는 강제퇴거명령집행정지 결정으로 해결 해야 함(법무부)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 부여 받아야 함을 명시(황), 1항에서 구두신청 규정을 두고, 3항은 보다 더 자세히 규정해야(수)1항- 2조4항의 변경된 정의에 맞게 변경되어야함. (UNHCR)4항- “certificate”를 “an individual document issued in his or her own name certifying his or her identity and status”같이 풀어서 써주어야함. 5조의 새로운 항을 만들어야함. 난민상태 결정절차와 같이 난민상태 신청에서도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이를 완전하게 보여주어야함. (UNHCR) |
| 공항,항만 등에서 난민인정의 신청(6조) | 4주 동안 머물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오,수),‘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의 문제점(수),신청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보완(수),원래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난민심사 특별규정은 남용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상황에서는 그런 특별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수) 2항-5항 난민상태 신청을 한 자를 국경지역에 머물게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불일치한다. 그리고 이는 절대적으로 최소한 유지되어야함. (UNHCR)특별히 vulnerable한 난민상태 신청자들은 국경절차를 면해주고 한국으로 받아들이길 추천함. (UNHCR) |
| 난민인정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게시 등(7조) | 1항- relevant information은 난민인정 신청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함. “other facts”에는 법적 조언자와 접촉할 수 있고 UNCHR의 대표자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켜야함. (UNHCR) |
| 난민인정의 심사(8조) | 1항을 난민면담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규정(오), 1항- “immigration officers”를 “refugee status officer”로 바꾸고 난민인정 신청자는 interview의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여야함. (UNHCR)2항- 이 구절은 삭제되어야함. (UNHCR)3항- 이 구절은 결정과정에서의 잠재적 변화를 반영해야하므로 바꾸어 써져야함. 정확하고 최신인 국가의 본래정보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야함. (UNHCR) |
|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9조) | 입증정도에 관한 규정 불필요(법무부)입증정도 완화가 더 드러나도록 규정(황), 심사당국의 조사의무 규정(황,수)[[4]](#footnote-4)입증책임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확인과 평가의 의무는 신청자와 난민전담공무원이 분담한다는 국제적 기준을 잘 반영하는 구절로 쓰길 추천함. (UNHCR) |
| 사실조사(10조) | 1항- 8조1항에서 언급했듯이 숙련된 사법부의 난민전담공무원가 모든 난민상태결정에 대한 업무들을 수행하도록 해야함. (UNHCR)2항- 모든 난민인정 신청은 원칙에 따라 개인적 인터뷰를 통해 승인되어야 함. (UNHCR)3항- 10조 3항에 나온 reporting 요청은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삭제해야함. (UNHCR) |
| 관계기관의 협조(11조) | 비밀유지조항추가(오),1항- “immigration officer”은 “refugee status officer”로 읽혀야함. (UNHCR) |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조) | 변호인의 조력권은 사법절차적 권리이므로 행정절차에도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 추가 검토 필요(전문위원)외국인 역차별, 재정적인 부담 과중(법무부)변호인이 아니라 변호사로 표현해야(수), 소송 단계에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난민인정절차나 이의신청절차에서’를 추가(수),1항- 의미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both in preparation of his or her claim, during interviews and at the appeal stage.”라는 구절을 추가해야함. (UNHCR) |
| 통역(14조) | 브로커 출연 막기 위해 자비로 통역인 지정하는 규정 일정한 제한 필요(수)UNHCR은 통역에 논란의 가능성 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의 개인 통역자들을 허락지아니하므로 UNHCR은 14조 2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UNHCR) |
| 서류 등 열람, 복사(16조) | 외국에 관련된국가 정보 유출 우려(전문위원)법무부 심사 이후 공개 하도록(법무부)11조 1항의 수정과 같이 “immigration officer”은 “refugee status officer”로 수정되어야하고 file에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시간도 주어져야함. (UNHCR) |
| 비밀의 보장(17조) | 처벌 규정의 부재(전문위원)3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사실의 조사 등 과정에서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정보가 출신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보완(수)17조에 “In principle, no information obtained in the RSD procedure should be shared with third parti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 concerned”의 구절을 추가해야함. 이는 정보에 대한 주장들은 민감한 사항인데다가 모든 종류의 주장들은 기밀이어야 하는데 17조 1항에서 civil servants(공무원)에게로만 제한되어 있고 정보는 “specifying the applicant’s identity(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UNHCR) |
| 이의신청 기간 등(18,21,22조,  | 신청기간 규정은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 규정 악용하는 사례 급증 우려, 난민인정절차 규정은 현지 확인 등 특수한 사정 고려해야 함, 바로 소송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하는지 불분명함(전문위원) 18조 1항- 친족이 난민인정을 받았을 경우 그 가족 공동원도 동등한 상태의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이차적(파생적) 난민인정을 받은 자들은 다른 인정받은 난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함. (UNHCR)18조 2항- 난민인정 신청자들은 모든 관련 정보들은 영어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UNHCR)18조 3항- “unavoidable situations”를 “justifiable reasons”로 바꾸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게 하고, 6개월의 기간은 5조 1항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신청으로 시작해서 서류제출일까지로 해야함. (UNHCR)18조 4항-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신청에 대한 결정이 연기될 수도 있음을 알도록 하고, 신청에 대한 결과를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 기일을 제공받도록 해야한다.”로 더 자세히 쓰여져야함. (UNHCR)18조 5항- 이 항목을, 실제 난민인정증명서 및 난민인정불허통지서를 구하는 것을 원한다 표시한 신청자들은 결정은 이미 났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함. (UNHCR) |
| 난민인정의 배제(19조) | 1항 1호 단서 말미의 표현을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수)  |
| 보호 중인 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21조) | 보호 해제 위한 난민신청자 속출 우려(전문위원)비교법적인 선례가 별로 없고 다른 외국인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김(법무부)장기 보호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규정은 관할, 심리절차에 혼선 초래할 우려 있으므로 인신보호법 제2조 개정으로 해결해야 함(수), 구금기간 상한 축소 필요함(황) 규정의 위치의 문제(검토) |
| 법적용례(26조) | 행정절차법과 조정 필요(전문위원)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임(법무부) |
| 인도적지위의 부여절차(27조) | 별도로 인도적 지위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함(전문위원)[[5]](#footnote-5)절차적 효율성을 위해 난민인정절차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황),  |
| 난민인정의 취소(23조) | 난민인정의 철회로 수정(오,수),  |
| 법적용례(26조) | 1항 삭제되어야 함(수),  |
| 난민위원회(29조) | 준사법기관과 난민정책심의의결기구가 아닌 민관정책자문기구 역할 담당하도록 해야(수)[[6]](#footnote-6),  |
| UN난민기구와의 협력(35조) | 난민위원회 심의과정 참여와 난민인정 및 이의신청절차에 참여는 협약에도 없는 규정으로 주권제약 문제와 외국 입법례 검토 필요(전문위원)4호 삭제하고 3호로 난민위원회에 의견 표명 정도로 수정(오) |
| 처우(36조) | 처우 중 난민협약의 일부만 규정한 방식의 문제점, 관련 상임위와 관련 부처 의견 들어야 함(전문위원), 일반규정과 함께 관련 규정 열거(황),  |
| 기초생활보장(38조) | 국민기초생황보장법 제5조와 제5조의2 적용을 배제하면 내국인의 처우 뛰어 넘는 혜택을 주는 것(법무부),  |
| 가족결합(44조) | 입국 강제하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 초래(전문위원)가족결합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EXCOM 권고 사항임(법무부), |
| 귀화(46조) | 요건 완화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전문위원)귀화요건 완화 보다는 체류자격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 함(법무부) |
|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의 처우(47조) | 형평성 문제(전문위원) |
| 생계비지원 등(48조) | 취업과 관련해서 현 출입국관리법과 조정 필요(전문위원)생계지원으로 수정해야 함(법무부), 생계지원으로 수정(황) |
| 주거지원(49조) |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규정 방식 수정되어야 함(법무부) |
| 교육권(51조) | 남용적 신청과 정주화 우려(법무부) |

1. 난민법안에 대한 2009.11.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2010.11.19 공청회 진술 정리(김종철) [↑](#footnote-ref-1)
2. 5년간 220억 예상 [↑](#footnote-ref-2)
3. 제○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과의 관계)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난민인정의범위에 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관련 규정과 달리 해석하는 근거가 되거나 난민 등의 지위를 위 협약 또는 의정서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게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footnote-ref-3)
4. 진정한 난민이 구제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함. [↑](#footnote-ref-4)
5. UNHCR는 ‘보완적 보호에 대한 보고서’(제네바, 2001)에서 단일 절차로 난민이나 ‘다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인도적 지위 등 포함)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을 권고 [↑](#footnote-ref-5)
6. 난민위원회 독립성 더 보강해야(우윤근) [↑](#footnote-ref-6)